

보도 일시	2022. 4. 5.(화) 배포즉시	배포 일시	2022. 4. 5.(화)	
담당 부서	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	책임자	과 장	전혜선 (02-2110-1530)
		담당자	사무관	신동재 (02-2110-1531) 김태균 (02-2110-1533)

방통위, 아웃링크 제한행위 실태점검 등 종합적 조치계획 마련

- 위반행위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하고, 신고센터 개설 및 피해구제 지원단·사업자 회의 등 조치 병행
-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 등은 법 위반 소지 있다고 판단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‘방통위’)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, 앱마켓사와 앱개발사,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,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다.

<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 >

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사의 아웃링크 제한행위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해 불임과 같은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으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.

방통위는 앱마켓사업자가 (1)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(아웃링크)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, (2)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개발사의 앱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, (3)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,

(4)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, (5)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0조제1항제9호의 ‘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’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.

다만,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, 강제성,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.

<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 >

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사가 웹결제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(해당 앱 삭제 포함)하거나, 웹결제 아웃링크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거나, API 인증 차단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.

<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극 활용 >

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(사업법 제51조의2)하거나 금지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(사업법 제52조의2)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.

<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 >

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·분석하기 위해 ‘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’를 온·오프라인에 4월 중에 개설할 계획이다.

이에 방통위는 앱 개발사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. 뿐만 아니라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.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·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‘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’을 구성(4월중)하여,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.

< 방통위-앱 마켓사-앱 개발자 다자회의 등 현장소통 강화 >

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앱 마켓 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방통위 - 앱 마켓사 - 앱 개발자 간의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소통도 강화한다.

< 앱 마켓 관련 금지행위 해설서 발간 >

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새롭게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, 적용 범위, 용어 및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하여 수범자와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
< 앱 마켓 운영실태조사 실시 >

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앱마켓 운영실태조사(사업법 제22조의9)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실태조사 결과는 인앱결제 관련 금지행위 규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 결제방식에 따른 앱 이용요금 비교/분석 및 자료 배포 >

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는, 동일한 앱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형태로

배포할 계획이다. 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가격을 비교, 자신이 이용할 앱 마켓과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“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어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,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붙임: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등이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. 끝.



[붙임]

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등이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[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관련]

1. 질의요지

구글이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(아웃링크)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?

2. 질의배경

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웹결제 아웃링크 등을 제한하는 구글의 결제정책이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함

3. 검토결과

이 질의는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(아웃링크)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
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취지는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는 “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”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(1) 앱 마켓사업자가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(아웃링크)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경우, 이는 같은 법 시행령 [별표4]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가목 “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 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·갱신·점검 등을 거부·지연·제한하거나 삭제·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2) 앱 마켓사업자가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시키는 경우, 이는 같은 법 시행령 [별표4]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나목 “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거부·지연·정지·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3) 앱 마켓사업자가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API 인증을 차단하는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, 이는 같은 법 시행령 [별표4]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다목 “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4)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을 앱 마켓사업자가 제한하거나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한 이용자에 대한 프로모션 등을 제한하는 경우, 이는 같은 법 시행령 [별표4]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마목 “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결제방식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(5)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한 이용자의 구매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등을 제한하는 경우, 이는 같은 법 시행령 [별표4]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마목 “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앱마켓 노출, 검색, 광고, 데이터 처리, 수수료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[별표4]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에서는 “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”고 규정하고 있고, 「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」(고시)에서는 거래상의 지위(제3조), 강제성(제4조), 부당성(제5조)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됩니다.

전기통신사업법	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[별표4]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
<p>제50조(금지행위) ① 전기통신사업자(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“금지행위”라 한다)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9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</p>	<p>8.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</p> <p>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며, 그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</p> <p>가.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·갱신·점검 등을 거부·지연·제한하거나 삭제·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</p> <p>나.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거부·지연·정지·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</p> <p>다.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</p> <p>라.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·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·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</p> <p>마.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결제방식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</p> <p>바.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앱마켓 노출, 검색, 광고, 데이터 처리, 수수료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</p>

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

제2장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

제3조(거래상의 지위) ①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[별표 4](제42조제1항 관련)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
1.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
 2. 앱 마켓 시장의 상황
 3.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
 4.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
 5.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, 해당 앱 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
- ②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서비스에 따른 매출액이 1,000억원 이상이고,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.

제4조(강제성)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[별표 4](제42조제1항 관련)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
1.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
2.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

제5조(부당성)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[별표 4](제42조제1항 관련)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 다만,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.

1.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.이용의 제한 정도,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
2. 앱 마켓 시장,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, 결제 시장 등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저해 우려